

□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회칙

- 제 정 1979. 5. 25 (제28차 총회)
- 1차 개정 1981. 5. 8 (제30차 총회)
- 2차 개정 1982. 6. 18 (제32차 총회)
- 3차 개정 1984. 6. 29 (제36차 총회)
- 4차 개정 1989. 7. 7 (제41차 총회)
- 5차 개정 1992. 7. 11 (제44차 총회)
- 6차 개정 1997. 7. 14 (제49차 총회)
- 7차 개정 2001. 12. 21(제53차 총회)
- 8차 개정 2010. 6. 22 (제62차 총회)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명칭) 본회는 국공립대학 도서관협의회라 칭한다.

제2조 (위치) 본회의 사무실은 회장교 도서관내에 둔다.

제3조 (목적) 본회는 국공립대학 도서관의 상호협력과 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대학의 교육 및 연구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 (회원의 자격)

①본회의 회원은 국공립대학 도서관 등으로 본회칙에 동의하는 도서관으로 한다(수정2010.6.22)

②신입회원도서관은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받고 연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(신설 2010.6.22)

제2장 조 직

제5조 (조직) 본 회에는 관장회, 임원회, 중경관리자회, 사무국 등을 두며, 필요할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(신설 2010.6.22)

제6조(임원)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- ①회장 1인
- ②부회장 2인
- ③이사 약간인

④감사 2인

제7조(임원선출) 회장, 부회장,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
제8조(임원의 임무)

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급 회의 의장이 된다.

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는 회장 권한을 대행한다.

③이사는 본회의 중요업무를 심의 의결한다.

④감사는 본회의 경리 및 회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.

제9조 (임원의 임기)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임원의 보직이 경질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임자로 하여금 잔임 기간 보임토록 한다.

제3장 임원회

제10조 (임원회 구성)

①본회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원회를 둔다.

②임원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
③임원회는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7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.

④감사는 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11조(임원회의 의결 정족수) 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.

제12조(임원회의 의결사항)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①총회에서 위임한 사항

②회장이 제안한 사항

③신입회원교 가입·승인 사항(신설 2010.6.22)

④기타 필요한 사항

제4장 사 업

제13조(사업)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①도서관 업무개선에 관한 공동연구 및 건의

②도서관 업무에 관한 간행물 출판

③실무연수 및 도서관학 세미나 개최

④도서관 자료의 교환

⑤각 대학과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 및 정보교환

- ⑥도서관업무 전산화 추진에 관한 협의
- ⑦회원 표창에 관한 사항(세부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)
- ⑧기타 필요한 사항

제5장 회 의

제14조(총회)

- ①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.
- ②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1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제15조(정기총회 의결사항) 정기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- ①회칙의 개정
- ②임원개선
- ③감사결과 보고 및 결산 승인
- ④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
- ⑤임원회에 위임 사항
- ⑥신입회원교 가입·승인 사항(신설 2010.6.22)
- ⑦기타 필요한 사항

제6장 재 정

제16조(재정)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보조금,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.

제17조(회비) 회비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한다.

제18조(회계 년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익년 6월 말일로 한다.

제7장 사무국장 및 총무

제19조(사무국장 및 총무)

- ①본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및 총무를 둔다.
- ②사무국장 및 총무는 회장이 위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.
- ③회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장 및 총무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- 제 정 1979. 05. 25(제28차 총회)
- 1차 개정 1981. 05. 08(제30차 총회)
- 2차 개정 1982. 06. 18(제32차 총회)
- 3차 개정 1984. 06. 29(제36차 총회)
- 4차 개정 1989. 07. 07(제41차 총회)
- 5차 개정 1992. 07. 11(제44차 총회)
- 6차 개정 1997. 07. 14(제49차 총회)
- 7차 개정 2001. 12. 21(제53차 총회)
- 8차 개정 2010. 06. 22(제62차 총회)